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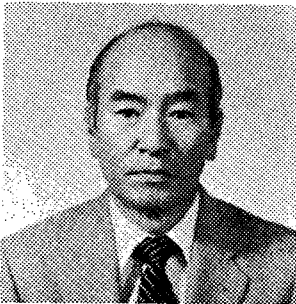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지정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에서 일찌기 알려진 하천수질오염의 심각성은 그동안 근본적 대책을 미루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그 해결에 속수무책의 난관에 봉착한 감이 든다.

그동안 학계나 주민들이 하천이 오염되어 있고 오염된 하천에서 공급되는 수도수가 역시 오염되어 있다는 불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하천상류는 맑다—상수원오염은 아직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변명해오던 당국에서 8월에 돌연 수도수가 고도로 오염되어 식수로 부적당하다라고 발표하여 이것이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게 되었다.

이미 환경청에서는 작년 부터 상수도수원인 팔당·대청호에서 부영양화가 심해지고 상류로부터 대량의 하수, 오물, 축산폐수가 호소에 유입되어 수원이 오염되고 상수수질을 위협하고 있어 호소수의 수질기준을 정하여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영양염류인 질소, 인분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서둘러 왔다.

그러나 이 특별대책지역지정은 상류지역의 토지이용이나 산업발전에 제약이 된다는 이유와 기존산업장의 이전문제, 주거지와 축산장의 폐수처리, 오물처리 등 새로운 부담을 부정하는 반대에 부딪치고 오늘날에 이르렀다.



권숙표 / 연세대학교 교수
본지 편집위원

이러한 과정에서도 불원간에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될 것을 예상해서 선취권을 노리는 업자는 지난 3~7월 사이에 팔당상류지역에 11개의 골프장건설을 경기도에 신청하였고 그중 6개 골프장이 9월 29일 일괄승인을 맡게 되었는데 심지어는 그중 1개 골프장은 신청 2개월 만에 초특급으로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환경청이 지시한 팔당·대청호 상수원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은 양호소주변 2,836㎞로 대전(동구), 경기(남양주군 등 7부 42개 읍면), 충북(청원군 등 3부 12개 읍면 등 1구 10개군 54개 읍면)을 포함하고 있어 이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내의 모든 기존특정유해물 및 배출업소는 92년까지 타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골프장, 호텔, 음식점, 가두리 양식장, 기업형 축산장 등 1일 500톤 이상의 폐수 배출업소의 증설, 신설이 금지되고 그밖에도 소규모 배수처리시설이나 오염처리가 우선적으로 의무화된다.

금번 건설부에서는 수도수수질악화를 발표하면서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0일에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제 1차 환경보전위원회에서 건설부, 농림수산부, 환경청 등 관계부처가 모여 팔당·대청호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을 논의했으나 관계부처간의 의견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회의에서 재론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또 건설부가 수도수수질악화를 발표한 이후에 판민합동으로 전국 536개 상수정수장의 수도수질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8개 정수장의 수도수만이 음용수수질기준에 불합격이고 기타 정수장은 양호하다고 발표(10월 11일)하는가 하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는 팔당상수원취수장수질이 오수유입의 단속이 강화된 8월부터 BOD 0.9ppm(8월), 0.85ppm(9월)로 더욱 맑아져서 상수원수 1급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맑은 수원에서 취수하여 정수처리하여 급수하는 수도수수질이 건설부가 처음에 발표한 것과 같이 식수로서 부적당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새삼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을 수질보전

대책 예정지역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론도 나올수 있게 된다.

이처럼 불과 1개월간에 건설부는 상수가 오염되어 식수로 부적당하니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예정지역내에 대규모오염원인 골프장이 6개나 건설이 승인되었다는 사실과 최근에 특별대책이 없이도 상수원인 팔당호수가 1급수로 맑아졌다는 발표와, 전국 536개의 정수장수가 대부분이 음용수수질기준에 합격되는 양질의 수질이었다는 발표와,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특별대책지역지정이 거부되었다는 상반되는 여러 발표들에 국민은 어느 것이 진실인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환경문제는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진 부작용이고 다분히 발전과 상충되는 현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과거에도 이러한 예는 많아서 어느 사건이있으면 그 문제를 크게 발표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수립했다가도 시일이 지나면 망각해버리는 것이 현대사회의 경향이라지만 금후의 수도수 수질오염문제도 동일한 예가 될까 두렵다.

문제해결은 환경보전보다 관계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더욱 우선했다는 인상이고 그것이 백안시되어 특별대책지역지정이 최고의결문제인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면 금후의 환경보전은 이해관계의 시각에서만 해결하게 되는 불행한 전례가 될 것이다.

원래 환경문제는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진 부작용이고 다분히 발전과 상충되는 현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보전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외부 불경제요소로 간주되고 기피되었던 것이고 발전과정에서 환경보전투자는 생산투자에 비해서 낮은 순위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번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의 지정은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의 청정적정
책수준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 같다.

이제 국민은 고도성장과 더불어 안정된 생활환
경을 요구하고 있고 소득이 어느 수준을 유지하
게 되었을 때에 문화적 욕구가 더욱 높아지는 것
은 당연하다.

안정된 생활환경이란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는
환경이며 매일 접하는 의식주에 위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환경오염은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이 될뿐만 아니라 자원의 질을 악화
시키므로써 우리의 생산활동에 장애가 되는 결과
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국민공통의 생활침해로 인
식되어야 한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의 지정안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의 최초의 시도였다는데서 큰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다수국민의 식수의 오염이 근본적으로 수원의
오염에 기인되고 있고 수원의 오염이 일부기업집
단이나 일부 지방경제의 이익을 위해서 유발된다
면 다수국민의 생활은 보호하는 뜻에서 그 행위
는 당연히 제약되어야 한다.

또 수혜자나 가해자를 막론하고 오염배출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
이 환경윤리인 것이다. 하류의 맑은물공급을 위
해서 상류지역의 토지이용이나 산업발전이 억제
되고 하수처리를 위해서 처리비부담이 부담하다
는 공급자와 하류지역의 수혜자간에 대립관계가
상존하고 또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시
대는 지났다.

다만 토지소유권행사가 공동사회의 이익을 위
해서 부분적으로 억제되었다면 수혜자가 이것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금번 팔당·대청호 상류의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지정은 이것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각지의 상
수도수원수질보전지역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각

종오염방지조치가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이번 상
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안은 합리적이
고 구체적인 대책의 최초의 시도였다는데에 큰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과거에 오염을
방치하고 이용자가 정화처리하는 모순된 대책에
서부터 근원적으로 오염을 방지하는 발전적대책
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나
라 하천오염방지에 막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을 의
심치 않는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밖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에 우선순위를 정착시키는 전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원적으로 이해관계를 해소
시키는 대책으로서 보상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
다. 이것은 어느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국가
나 개인의 재산권이 제약될때에 수혜자(재산권자
를 포함해서)가 제약에 해당하는 응분의 보상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혜자주인이 쾌적
한 환경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때에 보상의 방법이 제도적으로 공급자가 수
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금후에 규제나 지역지정
이 용이해질 것이고 또 대책의 경제성을 예측하
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요번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은 우리나라에서
환경보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지만 그
것으로 인해서 노정된 이해관계는 이미 과거에서
부터 잠재되어 있었고 금후 환경보전대책에서 더
욱 부각되고 이것이 대책수립에 중대한 사회적문
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보전대책에서 피해보상제도만 아니
라 환경공급자에 대한 사업보상, 토지이용의 공
적책임제도를 확립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

